

1. 개정이유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시 결격사유(전과·피한정후견인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등 별도 서류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허가신청서·신고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추가 및 그에 따른 부령 규정 정비(안 제7조제2항·제3항, 안 제 11조제3항, 안 제37조제1항·제2항, 안 별지 제11호, 안 별지 제17호)
-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이 기재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결격사유 확인 가능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예정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아래 각 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제11조제3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아래 각 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7조제2항제2호”를 “제7조제2항제2호(해당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아래 각 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허가신청서
유원시설업
[]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에는 √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 종수	안전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 수 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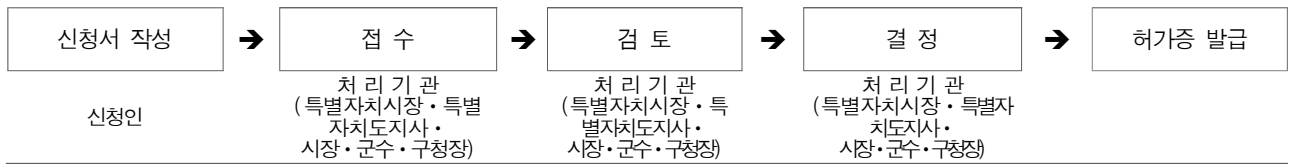
1.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 나.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 허가의 경우	1.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사업계획서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 업 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유 기 시 설 또는 유기 기구 종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시 설 및 설 비 설 치 완 료 (예 정) 일	년 월 일		
단 기 영 업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 수 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유의사항
1.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가 제한됩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 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만 해당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 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생 략)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 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 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 <u>표자 및 임원</u>)이 내국인인 경 <u>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u> <u>를 기재한 서류</u>	<삭 제>
2의2. (생 략)	2.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③ -----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④ · ⑤ (생 략)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받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단서 신설>

 --- 다음 각 호의 서류-----

--. 다만, 신청인이 아래 각 호
 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
 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일 경
 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만 해당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음 각 호의 서류-----

--. 다만, 신청인이 아래 각 호
 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신 설>

<신 설>

④ · ⑤ (생 략)

제37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 허가 신청) ① 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 허가 신청) ① -----

---- 제7조제2항제2호(해당되는 경우) -----

② -----

-- 다음 각 호의 서류-----

-----.

<u><단서 신설></u> <u><신 설></u> <u><신 설></u> ③・④ (생 략)	<u>다만, 신청인이 아래 각 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u> <u>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u> <u>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u> ③・④ (현행과 같음)
--	---